◎ 기준점 좌표

구분	X	Y	Z	비고
CP.1	56224.628	172080.186	5.908	
CP.2	56131.008	172089.047	8.743	
CP.3	56104.011	172093.175	10.737	
CP.4	56059.032	172012.531	13.548	
CP.5	56054.893	172004.824	13.771	
CP.6	56042.290	171982.825	14.410	

◎ 현 황 범 례

기호	명 칭	비고	기호	명 칭	비고
EL	도 근 점			교통표지판	
	건 물			가 로 등	
W	하 수 맨 홀			묘 지	
C	통 신 맨 홀				
E	전 신 주			돌 담	
T	통 신 주			돌 탑	
	집 수 정			담 장	
	U 형 측 구			화 단	
CONC	콘크리트			등 고 선	
ASP	아스팔트			지적경계말뚝	

◎ NOTE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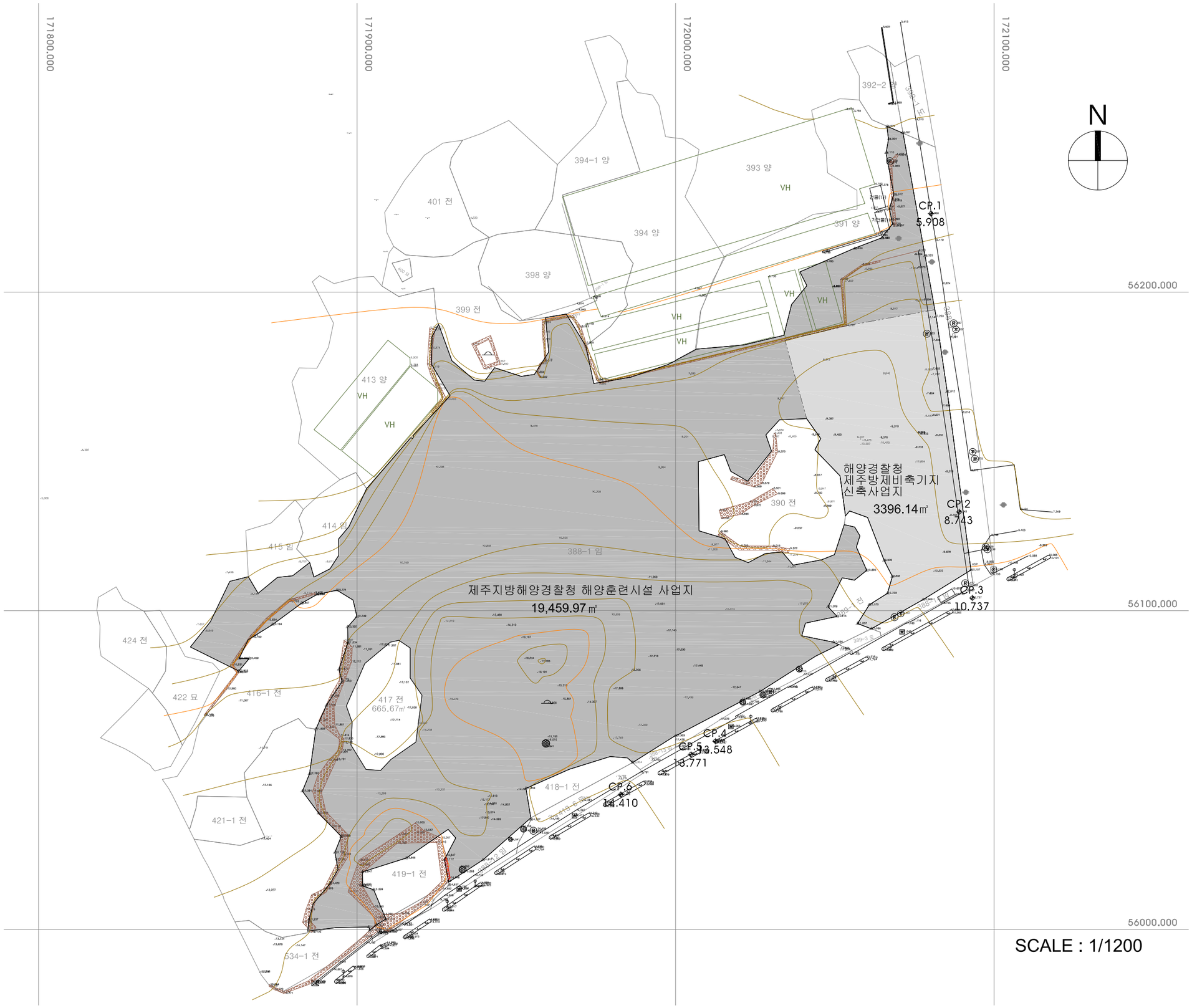
1. 국립지리정보원의 GRS80 타원체 고시에 의한 현황측량
2. 본 성과도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성과도이며, 계획부지는 지적법에 의한 국토정보(LX)공사의 경계측량에 의함
3. 수준점은 GPS에 의한 좌표계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비행고도지역 및 건축높이 제한이 수반되는 계획은 추가적으로 직접수준측량을 시행하여야함
4. 지하매설물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매설물에 대하여 작성하였고 시공시 지하매설물탐사 및 관할 부서에 확인하여 시행 하여야함
5. 착공시 경계핸스설치는 사업부지의 담장등 철거후 LX공사에 지적경계 복원측량을 신청 또는 재신청하여 수행후 설치하여야함